

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2다12338 부당이득금
원고, 피상고인 A
피고,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
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2. 1. 17. 선고 2001나20560 판결
판 결 선 고 2002. 8. 13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0-28

재판장 대법관 서 성 _____

 대법관 배기원 _____

주 심 대법관 박재윤 _____